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19
----------	------

제출년월일 : 2012.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공수의의 선택의 폭을 넓혀 전문성 있는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공수의의 임기를 정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현 조례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월10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단원구의 경우 많은 축산농가가 대부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시간, 유류비등의 문제로 공수의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이가 없으므로 대부지역에 한해 월5회 이상으로 횟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나. 위촉된 공수의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 가능.(안 제2조제3항)
- 라. 단원구 대부동 지역에 한해 월5회 이상으로 순회 출장횟수를 하향 조정.(안 제6조)

□ 기대효과

- 공수의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임기를 정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순회출장 횟수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공수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 공수의로 하여금 우리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및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12. 15. ~ 2012. 1. 1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조례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산시공수의 (이하 “공수의” 라 한다)” 를 “안산시공수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해촉 등) ①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월10일” 을 “월10일(대부동 지역은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 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생명산업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생명산업과장 정 점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축산물안전계장 노 재 달
	담당자 성명·전화	박 진 길 (행정 23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산시공수의</u> (이하 “ <u>공수의</u> ”라 한다)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안산시공수의</u> ----- .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u>공수의</u> 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해촉 등) ① <u>안산시장</u>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u>안산시공수의</u> (이하 “ <u>공수의</u> ”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u>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u>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u>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u>	제3조(공수의의 업무)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 범위 ----- .
제5조의2(여비) ① (생 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u>	제5조의2(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u>공수의는 월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u> ② <u>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월10일(대부동 지역은 5일) ----- . ② ----- <u>시장</u> ----- .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219
------------	------

제출년월일 : 2012년 3월 8일
제 출 자 : 경제사회위원장

안산시조례 제 호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한다.

1. 수정이유

- 공수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수의의 위촉범위가 상위 법령과 상충여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수의의 위촉 사항을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위촉) 구청장을 개업증인 수의사증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p> <p>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p>	<p>제2조(위·해촉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개정안과 같음)</p> <p>③(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위·해촉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개정안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 동물의 진료
-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 동물의 건강진단
-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